

의안번호	2200379
의 퇴 인	김선민 의원
회 답 일	2024. 6. 24.
추 계 번호	24C06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0조의 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 중 실업크레딧·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36개월간 예산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현행)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으로 납부예외자가 되었다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시,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12개월 지원(단, 실업크레딧·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재량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0조의 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가 곤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수와 이들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소득 정보, 대상자가 최대 36개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의 기준¹⁾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역가입자 중 특정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 수를 알 수 없음
 - － 현행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1,680만원 미만인 반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의 재산은 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한 후에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확인이 가능
 - 개정안은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가입자 및 신규 지역가입자 각 개인의 향후 소득 변동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인별 평균 지원 기간 및 최대 36개월 지원 달성 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조(지원대상 재산·소득기준) 영 제73조의4 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